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4가단520501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3. C

변론 종결2015. 6. 2.

판결 선고2015. 7. 14.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1,184,202원 및 그 중 50,576,945원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4. 10. 1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B, C 사이의 별지 목록 1항 기재 채권에 대한 각 2014. 2. 26.자 채권양도계약은 이를 각 취소한다.

나. 피고 B, C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공탁금출급채권을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과 : 서울동부지방법원 세입세출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공탁금출급채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3. 12. 17.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5,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3. 12. 17.부터 2014. 12. 16.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2013. 12.경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기간을 2013. 12. 17.부터 2014. 12. 16.까지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1) 피고 A은 2014. 3. 18.경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2014. 3. 28. 원고에게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4. 5. 29.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50,576,945원(= 보증원금 5,000만 원 + 이자 576,945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 보전비용으로 689,857원을 지출하였고, 피고 A으로부터 82,600원을 회수하였다.

3) 원고의 구상금채권 이율은 2014. 5. 29.부터 현재까지는 연 12%로 정해져 있다.

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1) 피고 A은 2014. 2. 26.경 피고 B, C에게 피고 A의 D에 대한 서울 중구 E 외 2필지 F상가 2층 제01-16호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각 양도(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D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각 채권양도 당시 피고 A은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5,000만 원이 유일하였던 반면에 소극재산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5,900만 원 대출금 채무, 피고 B에 대한 5,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피고 C에 대한 1,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이외에도 다수의 채무가 있었다.

라. 공탁

D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금1443호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수 개의 채권양도 토지가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A에게 지급할 보증금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나 1 내지 13호증, 을라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51,184,202원(= 대위변제금 50,576,945원 + 보전비용 689,857원 - 보전비용 회수금 82,6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50,576,945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2014. 5. 29.부터 2014. 10. 11.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4858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 을나 4호증, 을라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A과 피고 B, C 사이에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14. 2. 26.경(피고 B은 2013. 12. 4.경, 피고 C은 2013. 11. 15.경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임대인인 D에게 2014. 2. 26.경 채권양도통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2. 26.경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맺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에는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이를 기반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발생하여 있었던 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제6조 제1항 제4호),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제6조 제1항 제13호) 등 제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피고 A은 2013. 12.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는 외에 그 무렵 피고 B, C, 소외 G으로부터 다액의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치 못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2012. 2. 26. 무렵에는 재정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 A이 피고 B, C에게 이 사건 보증금채권을 양도한 때로부터 1개월이 되지 않는 시점인 2014. 3. 18. 피고 A이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피고 A이 이 사건 보증금채권을 피고 B, C에게 양도할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그 후 실제로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50,576,945원을 대위변제하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A의 피고 B, C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인데,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피고 A이 채권자 중의 하나인 피고 B, C에게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A과 피고 B, C의 관계,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시기 및 그 경위, 그리고 당시의 피고 A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그 처분행위가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가져와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행한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 B, C의 선의 항변

피고 B, C은, 자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B,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 C은 피고 A에게 공탁금출급채권을 양도하며,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김경희

별지